

「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6. 02. 25.
- 회부일자 : 2026. 03. 12.
- 상정일자 : 2026. 03. 13.

2. 제안이유
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, 보육 현장의 안정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 및 제5조)
-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18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

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.

- 안 제8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평창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위원회는 「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에 따른 “평창군 보육정책 위원회”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합리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, 보육교직원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안전한 보육현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**영유아보육법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12. 19., 2011. 6. 7., 2023. 8. 8., 2024. 2. 6.>

1. “영유아”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”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. 23.>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6. 7., 2011. 8. 4., 2020. 12. 29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0. 12. 29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2. 6.>

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3. 8. 13., 2023. 12. 26.>

②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,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23. 12. 26.>

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18조의3(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
2.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·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
3.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4.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, 노무 및 심리·정서 관련 상담

5.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2. 6.]